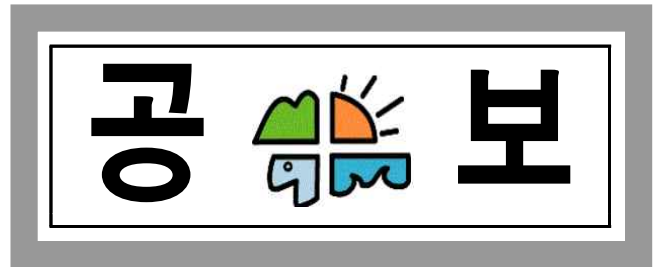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471호 2023년 6월 2일(금)

조 례

-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 속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9
- 속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속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공 고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6호선 및 소로2-97호선)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 19
- 2023년 속초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22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2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16호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3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2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17호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일부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

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관내 일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도로 면적은 제외한다)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상권컨설팅
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상 점 가 명 :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
4. 면적·점포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직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m², 건물 연면적: m², 영업장 면적: m²,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m²)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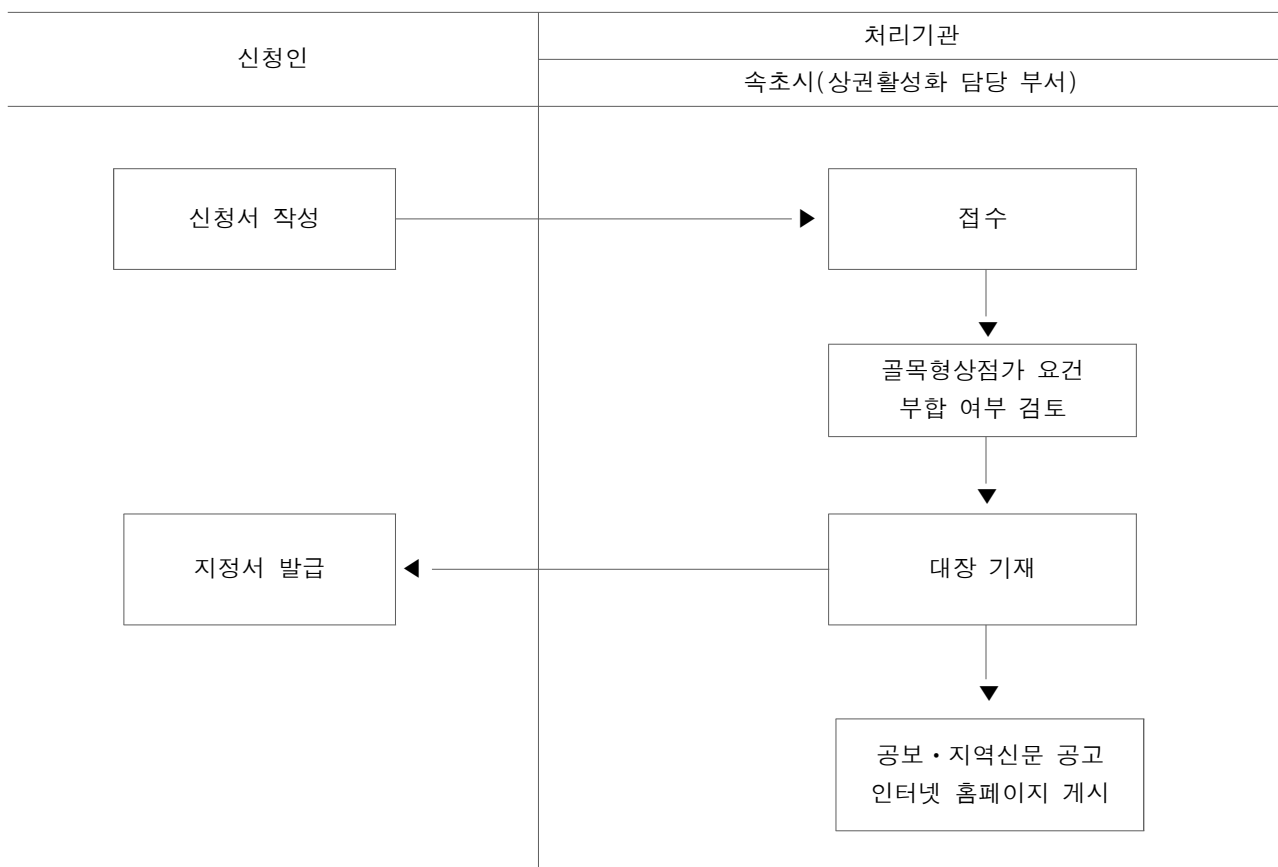
속 초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속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2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3018호

속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속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법 제24조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상시영업상인
2. 자율상권조합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2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3019호

속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등) 제1항 중 “소관 과장”을 “소관 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2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20호

속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2조제5호(종전의 제4호) 중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을 “법 제45조에 따른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의 예방을 담당하는”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호보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지원,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2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21호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시민”을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 제 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기반시설 :”을 “도시기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공이용시설 :”을 “공공이용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등 :”을 “등:”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설치)”를 “(기능)”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 중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소장”을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9조 앞에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하고,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 (회의) ①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의 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제27조(중전의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각종 워크숍 및 간담회 참석 경비
2. 참여단의 모니터링 활동비
3. 참여단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선진지 견학 경비
4. 참여단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제24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2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22호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학금이라 함은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제3조제3항 중 “50억원”을 “100억 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023년 11월 12일”을 “2028년 11월 12일”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장학금”을 “등록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장학금”을 “등록금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6호선 및 소로2-97호선)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1.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6호선 및 소로2-9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의 열람을 실시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일
속 초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속초시 청호동 444-16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6호선 및 소로2-97호선)
 -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6호선 및 소로2-97호선)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우리자산신탁(주)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금회 사업규모	비고
도로	소로1-16호선	B=10~12m, L=307m	B=10~14m, L=85m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폭 변경 예정
	소로2-97호선	B=8~10m, L=245m	B=8~10m, L=148m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2. 31.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3. 6. 2. ~ 2023. 6. 16.
 - 장소: 속초시청 미래도시국 미래전략과 도시계획팀
7. 법 제99조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시설명	시설의 세분	사업규모	면적	비고
도로	소로1-16호선	B=10~12m, L=85m	117㎡	도시계획시설 내 편입 토지 및 새로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
	소로2-97호선	B=8~10m, L=148m	1,616㎡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1-16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사업면적(㎡)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도시 계획선내	도시 계획선외	계	성 명	주 소	
1	청호동	444-160	대	525	3	-	3	속초시		
2	"	459-114	대	331	4	-	4	속초시 외 1인		
3	"	459-116	대	116	24	-	24	속초시 외 1인		
4	"	444-37	대	321	1	-	1	속초시		
5	"	444-161	대	1,369	36	-	36	속초시		
6	"	444-18	대	2,267	49	-	49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 **층(역삼동)	
계				4,929	117	-	117			

■ 토지조서(2-97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사업면적(㎡)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도시 계획선내	도시 계획선외	계	성 명	주 소	
1	청호동	444-160	대	525	293	-	293	속초시		
2	"	459-114	대	331	14	-	14	속초시 외 1인		
3	"	459-116	대	116	24	-	24	속초시 외 1인		
4	"	444-37	대	321	170	-	170	속초시		
5	"	444-161	대	1,369	74	-	74	속초시		
6	"	444-154	대	35	33	-	33	속초시		
7	청호동	444-155	대	378	294	-	294	속초시		
8	"	444-50	대	1,031	3	-	3	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14*, 비동 3***호(여의도동)	
9	"	444-88	대	277	43	-	43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 **층(역삼동)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사업면적(㎡)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도시 계획선내	도시 계획선외	계	성 명	주 소	
10	"	444-157	대	9	1	-	1	속초시		
11	"	444-156	대	53	1	-	1	속초시		
12	"	444-99	대	211	91	-	91	****신탁(주)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 **층(역삼동)	
13	"	444-98	대	265	9	-	9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 **층(역삼동)	
14	"	444-100	대	31	28	-	28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 **층(역삼동)	
15	"	444-150	대	124	124	-	124	속초시		
16	"	444-103	대	104	8	-	8	김*현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444-***	
17	"	444-152	대	34	34	-	34	속초시		
18	"	444-52	대	142	44	-	44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 **층(역삼동)	
19	"	444-95	대	201	62	-	62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 **층(역삼동)	
20	"	444-104	대	19	19	-	19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 **층(역삼동)	
21	"	444-27	도	187	136	-	136	속초시		
22	조양동	1415	대	58	57	-	57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 **층(역삼동)	
23	청호동	444-124	대	10	1	-	1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 **층(역삼동)	
24	조양동	1383-4	도	13,071	53	-	53	속초시		
계				18,902	1,616	-	1,616			

2023년 속초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에 따라 2023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속 초 시 장

1. 부과대상지역 : 속초시 하수처리구역 내

2.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 3,040,000원/m³

3.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건축물의 전체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10m³/일을 초과하는 양

4.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
※ 별 표 :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5. 부담주체

-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

6.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 부과대상 오수발생량(m³/일)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m³)

7. 부과·징수방법

-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과 용도를 변경하는 면적이 100 m² 이상인 경우에는 인가·허가 시 추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임시사용

승인 포함) 최종금액을 계산하여 부과

- 징수 및 납부 시기는 건축물의 준공 시에 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면적이 100 m² 미만인 경우에는 인가·허가 시에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공고 시행일부터 속초시 공고 제2022-517호(2022.5.9.)는 폐지한다.
- ③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다.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분류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mg/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1	주거시설	단독주택	단독주택 농업인 주택, 공간	200ℓ/인	200	농업인주택과 읍·면 지역의 1일 오수발생량은 170ℓ/인을 적용한다.	$N = 2.0 + (R - 2) \times 0.5$	N은 인원(인), R은 1호당 거실 개수(개)의 의미 한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200ℓ/인	200		$N = 2.7 + (R - 2) \times 0.5$	1호가 1거실1)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2인으로 한다.
			기숙사,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2), 다중주택3)	7.5ℓ/㎡	200		개별취사시설이 있는 경우 단독주택 용도를 적용한다.	$N = 0.038A$, 연면적3)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2	문화및집회시설	공연장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12ℓ/㎡	150	-	$N = 0.060A$	-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장례식장	12ℓ/㎡	150	-	$N = 0.060A$	-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25ℓ/㎡	150	-	$N = 0.125A$	-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제실(祭室), 사당	12ℓ/㎡	150	-	$N = 0.060A$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7.5ℓ/㎡	200	-	$N = 0.038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	10ℓ/㎡	260	-	$N = 0.050A$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모델하우스	16ℓ/㎡	150	-	$N = 0.080A$	-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16ℓ/㎡	150	-	$N = 0.080A$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mg/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3	판 매 및 영 업 시 설	시장 · 상점	도매시장, 마을공동구판장, 소매시장, 표구점, 소매점, 사진관, 의약품판매소, 도료류판매소, 서점, 장의사, 충포판매소, 애완동물점, 가축시장, 자동차영업소, 의료기기판매소	15ℓ/m²	250	육류,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오수발생량은 5ℓ/m²·일, BOD농도는 50mg/ℓ을 가산한다.	N= 0.075A	-
			노래연습장	16ℓ/m²	150	-	N= 0.080A	-
			기원	25ℓ/m²	150	-	N= 0.125A	-
		위생을 관리 하거나 의류 등을 세탁·수 선하는 시설	이용원, 미용원, 동물미용실	15ℓ/m²	100	-	N= 0.075A	-
			세탁소	15ℓ/m²	250	영업용 세탁 오수를 오수 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할 경우에는 시설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발생량에 추가한다.	N= 0.075A	-
			목욕장5)	46ℓ/m²	100	-	N= 0.230A	-
			안마시술소, 안마원	15ℓ/m²	100	-	N= 0.075A	-
			찜질방	16ℓ/m²	100	목욕장이 있는 경우 목욕장에 대한 오수는 별도 산정한다.	N= 0.080A	-
		게임관련 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25ℓ/m²	150	-	N= 0.125A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20ℓ/m²	250	-	N= 0.100A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4ℓ/m²	260	-	N= 0.057A	-
		음 료 · 차 (茶)·음식·빵· 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 하여 판매하 는 시설	식품즉석 제조 가공식품점6)	30ℓ/m²	130	-	N= 0.150A	-
			휴게음식점 등	35ℓ/m²	100	일반음식점의 메뉴를 판매하는 경우 일반음식점 용도를 적용한다.	N= 0.175A	-
		음 식 점	일반음식점	70ℓ/m²	550	중식	N= 0.175A	-
					330	한식, 분식점		
					200	일식, 호프, 주점, 뷔페		
					150	서양식		
			부대급식시설7)	15ℓ/인(1인1식기준)	330	부대급식시설 유입농도의 경우 한식 농도를 적용한다. 1일에 제공되는 끼니수가 1식이 추가될 경우 15ℓ/인을 추가로 가산한다.	-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mg/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4	의료 시설	종합병원	40ℓ/m ²	300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N= 0.200A	-
		급식시설이 있음	30ℓ/m ²	300		N= 0.150A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 진료소 급식시설이 없음	25ℓ/m ²	150		N= 0.125A	-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 한 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18ℓ/m ²	150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15ℓ/m ²	150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N= 0.075A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산후조리원	30ℓ/m ²	300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
5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	동물병원, 인공수정센터	15ℓ/m ²	150	-	N= 0.075A	-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6ℓ/m ²	100	-	N= 0.050A N= 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정 원 산정식 적용가능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교육원, 전문대학, 직업훈련소 주간	7ℓ/m ² (중학교) 8ℓ/m ² (중학교 이외)	100	-	N= 0.058A (중학교) N= 0.067A (중학교 이외) N= 0.33P	
		주야간 병설	12ℓ/m ² (중학교) 14ℓ/m ² (중학교 이외)			N= 0.100A (중학교) N= 0.116A (중학교 이외) N= 0.33P+0.25P'	
		연구소, 시험소, 동물검역소, 계측계량소	8ℓ/m ²	100	-	N= 0.067A N= 0.33P	
		공공도서관, 독서실, 도서관, 학원, 교습소	15ℓ/m ²	150	-	N= 0.075A	-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시설, 연수원, 청소년 수련원,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 시설	9ℓ/m ²	200	-	N= 0.045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유스호스텔	9ℓ/m ²	140	-	N= 0.045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mg/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6	운동 시설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 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썰매장, 수영장, 놀이형 시설,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 연습장	15ℓ/m ²	100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 (목욕장 용도)로 가산 한다.	N= 0.075A	-	
		골프장	30ℓ/m ²	100		N= 0.150A	-	
		물놀이형 시설	40ℓ/m ²	100		N= 0.200A	-	
		테니스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3ℓ/m ²		150	N= 0.015A	-
			야간조명시설 없음	2ℓ/m ²		150	N= 0.010A	
		게이트볼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1ℓ/m ²		150	N= 0.005A	
			야간조명시설 없음	0.5ℓ/m ²		150	N= 0.003A	
		7	업무 시설	일반 업무시설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15ℓ/m ²	100
금융업소	15ℓ/m ²				100	-	N= 0.150A	-
오피스텔	10ℓ/m ²				200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 공동주택(아파트)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한다.	N= 0.050A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 공동주택(아파트)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한다.
공공업무 시설	외국공관, 공공청사,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전신전화국, 건강보험공단사무소			15ℓ/m ²	100	-	N= 0.150A	-
	보건소			18ℓ/m ²	150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N= 0.090A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15ℓ/m ²	150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N= 0.075A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파라미터 이름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mg/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8	숙박 시설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고시원(숙박시설 중 다 중생활시설6))	20ℓ/m²	70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	N= 0.080A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
			20ℓ/m²	140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	N= 0.067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
		관광펜션	35ℓ/m²	140	-	N= 0.140A	-
		농어촌민박시설	35ℓ/m²	140	주거전용면적이 100m²이하인 주택이면서 객실이 2실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숙박시설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 용도를 적용할 수 있다.	N= 0.140A	주거전용면적이 100m²이하인 주택이면서 객실이 2실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숙박시설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 용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9L/m²	320	전체면적중 숙영시설(객실, 캠핑장, 야영장시설 ⁹⁾⁾ 등 오수가 발생하는 면적만 합산한다.	N= 0.045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전체면적중 숙영시설(객실, 캠핑장, 야영장시설 ¹⁰⁾⁾ 등 오수가 발생하는 면적만 합산한다.
		글램핑장 등 고정숙영시설	20L/m²	140		N= 0.080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9	위락 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46ℓ/m²	250	-	N= 0.230A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의 시설 ¹⁰⁾	15ℓ/m²	100	-	N= 0.075A	-
		투전기업소, 카지노영업소,	25ℓ/m²	150	-	N= 0.125A	-
		무도장, 무도학원	16ℓ/m²	150	-	N= 0.080A	-
10	공업 시설	공장, 정비공장(카센터 포함)	5ℓ/m²	100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식품제조가공업 ¹¹⁾	15L/m²	100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제조업소, 수리점	5ℓ/m²	100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	5ℓ/m²	100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등)	25ℓ/m²	260	-	N= 0.500A	-
11	자 동 차 관 련 시 설	주차장 ¹²⁾ , 주기장 ¹³⁾	25ℓ/m²	260	주차장·주기장 전체 면적 중 오수를 발생시키는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의 면적만 합산한다. (세차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1일 오수발생량을 추가 한다.)	N= 0.500A	주차장·주기장 전체 면적 중 오수를 발생시키는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의 면적만 합산한다. (세차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1일 오수발생량을 추가 한다.)
		(자동차)매매장	15ℓ/m²	100	전시면적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한다.	N= 0.075A	전시면적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한다.

분류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mg/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12	공공용 시설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 갯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7.5ℓ/㎡	200	-	N= 0.038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촬영소	15ℓ/㎡	100	-	N= 0.075A	-
		군대숙소	7.5ℓ/㎡	200	-	N= 0.038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공중화장실	170ℓ/㎡	260	-	N= 3.400A	-
		주민 공동 이용 시설	마을회관	12ℓ/㎡	150	N= 0.060A	-
			마을공동작업소, 대피소	5ℓ/㎡	100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마을공동구판장	15ℓ/㎡	250	N= 0.075A	-
			공중화장실	170ℓ/㎡	260	N= 3.400A	-
			지역아동센터	6ℓ/㎡	100	N= 0.050A N= 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에너지 공급, 통신 서비스 제공, 급수 배수 및 관련 시설	발전소,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5ℓ/㎡	100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13	모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16ℓ/㎡	150	-	N= 0.080A	-
14	관광 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10ℓ/㎡	260	-	N= 0.050A	-
		어린이회관	6ℓ/㎡	100	-	N= 0.050A N= 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관망탑	16ℓ/㎡	150	-	N= 0.080A	-
		휴게소	20ℓ/㎡	260	-	N= 0.400A	-

주. 1) 거실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로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하고, 독립된 별도 공간으로 침실기능이 가능한 경우 거실로 본다.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거실과 분리되어 별도 확보된 부엌 및 식당, 드레스룸, 파우더룸 및 다용도실(세탁실, 보일러실, 창고 등)은 거실에서 제외한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고시원을 말한다.

3)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 말한다.

4)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5) 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을 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떨어져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예시 : 반찬·죽·떡 가게 등).

7)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상주는 하지 않지만 해당 시설의 정원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부대급식시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한다.

8) 다중생활시설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 말한다.

9) 야영장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9호의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10)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은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

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 1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되어 식품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예시 : 김치 공장 등).
- 12)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11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며, 다른 건축물 용도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 13)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 두는 시설을 말한다.
- 14)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규정에 따른 시설물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15) A는 연면적(m^2), N은 인원(인), P는 정원(인), R은 1호당 거실의 개수(개)를 의미한다.